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및 용역완수검사 실시 누락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●●●●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●●●●과는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 계약 업무를 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재정법」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되어 있고, 같은 법 제7조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·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·물품·용역,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●●●●과는 ㉠㉠㉠교실 폐쇄 관련 불용물품 폐기용역을 추진하면서, ㉠㉠㉠교실 폐쇄에 따른 불용물품 폐기가 2023년 3월에 실제 추진되었음에도 2022년 12월에 용역완수검사 없이 불용물품 폐기비용을 지급하였다.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●●●●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●●●●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